중앙하이츠 MARE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안드로이드 | 아이폰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국토교통부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체온측정 및 기타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 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1.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1.08.25)**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8.24.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안산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08.24. 광고일과 다름)** 현재 안산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안산시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8월 30일(월)	9월 2일(목) 16:00시 이후	9월 3일(금)(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중앙하이츠 마레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2, 2층)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안산시 단원구 **2021-건축디자인과-15호(2021.08.24.)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안산시 단원구 2021-건축디자인과 - 신축허가 15호(2021.06.01.)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시행수탁 : 아시아신탁㈜ / 시행위탁 : ㈜나래홀딩스 / 분양대행 : ㈜밸류플러스

■ 시공사 : 동우개발㈜ / ㈜신화종합건설

■ 공급위치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0-3번지 일대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7,190.10㎡
- 용도지역,지구 : 도시지역,준공업지역,주차장,국가사업단지 등
- 건축물 연면적 : 72,794.68㎡(오피스텔 : 19,547.63㎡)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1층(기계실등),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지상1~8층(주차장), 지상9~16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1층 ~ 지상 16층 1개동 중 오피스텔 총 672세대
- 주차대수 : 1,196대

■ 내진설계 등급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참조)

유효지반가속도(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
0.176	S_5	1.2	D	I	4.0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 오피스텔

타 입	공급호실(수)	신청 유형 호실(수)		면적(㎡)					대지 지분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20%)	일반공급	전용면적	층공용면적	전체 공용면적	주차면적	계약면적		
A	160	32	128	020.1600	2.4000	2.7559	해당없음	025.3159	2.4896	※ 분양신고일 기준(2021. 08. 24. 광고일과 다름) 주민등록등본 상 안산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을 통해 각 타입별, 층, 호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선정
A1	16	3	13	020.1600	2.8300	2.7559		025.7459	2.4896	
B	312	62	250	020.1200	2.4700	2.7507		025.3407	2.4846	
B1	24	4	20	020.1200	2.9000	2.7507		025.7707	2.4846	
B2	16	3	13	020.1200	2.8700	2.7507		025.7407	2.4846	
C	104	20	84	027.6300	2.7300	3.7773		034.1373	3.4120	
C1	8	1	7	027.6300	3.1100	3.7773		034.5173	3.4120	
D	16	3	13	059.6900	4.5000	8.1605		072.3505	7.3710	
D1	16	3	13	059.6900	4.9300	8.1605		072.7805	7.3710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안산시 단원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안산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08.24 광고일과 다름)** 현재 안산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상기 공급금액은 각 호실별, 층 및 향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오피스텔 타입별, 층, 향, 면적을 감안하여 차등적용 되었으며,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유형별 공히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근생시설, 주차장시설에 대한 대지를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과정, 지적정리, 확정측량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의 면적 변동 및 이로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상세 호실별 금액은 상기 금액을 참고하시고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안내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호실당 계약면적에는 주민편익시설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로 주민편익시설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건물은 주차장용지에 건축되는 복합건축물로써,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면적에 주차장 면적은 포함되지 않고, 수분양자는 주차장시설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입주자의 편의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오피스텔의 법정 주차 대수인 세대 당 0.7대 이상으로, 주차장 소유자와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일반관리비 수준의 비용으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분양대상 오피스텔 총세대는 672실구성되어 있으니, 청약신청 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납입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여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비로 배분하고 형별 대지지분은 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등)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전용면적비로 배분하고 각 실별 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공용면적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 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지하철, 도로 교통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유형	타입	공급호실	층별	호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10%) 21.11.25	2회(10%) 22.02.25	3회(10%) 22.05.25	4회(10%) 22.08.25	5회(10%) 22.11.25	6회(10%) 23.03.25	입주시
오피스텔	A	160	9~10층	23~28	14,601,765	120,599,763	12,059,976	147,261,504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44,178,451
				16~20												
				84	13,943,138	115,159,990	11,515,999	140,619,127	14,061,913	14,061,913	14,061,913	14,061,913	14,061,913	14,061,913	14,061,913	42,185,738
				65~71	14,931,079	123,319,649	12,331,965	150,582,693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45,174,808
				52	13,943,138	115,159,990	11,515,999	140,619,127	14,061,913	14,061,913	14,061,913	14,061,913	14,061,913	14,061,913	14,061,913	42,185,738
			11~13층	23~28	14,931,079	123,319,649	12,331,965	150,582,693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45,174,808
				16~20												
				84	14,272,451	117,879,877	11,787,988	143,940,316	14,394,032	14,394,032	14,394,032	14,394,032	14,394,032	14,394,032	14,394,032	43,182,095
				65~71	15,260,392	126,039,536	12,603,954	153,903,882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46,171,164
				52	14,272,451	117,879,877	11,787,988	143,940,316	14,394,032	14,394,032	14,394,032	14,394,032	14,394,032	14,394,032	14,394,032	43,182,095
			14~16층	23~28	15,260,392	126,039,536	12,603,954	153,903,882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46,171,164
				16~20												
				84	14,601,765	120,599,763	12,059,976	147,261,504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44,178,451
				65~71	15,589,706	128,759,422	12,875,942	157,225,070	15,722,507	15,722,507	15,722,507	15,722,507	15,722,507	15,722,507	15,722,507	47,167,521
				52	14,601,765	120,599,763	12,059,976	147,261,504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44,178,451
	A1	16	9~10층	21~22	14,601,765	120,599,763	12,059,976	147,261,504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14,726,150	44,178,451
			11~13층	21~22	14,931,079	123,319,649	12,331,965	150,582,693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15,058,269	45,174,808
			14~16층	21~22	15,260,392	126,039,536	12,603,954	153,903,882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15,390,388	46,171,164
	B	312	9~10층	30~48	15,230,114	125,789,457	12,578,946	153,598,517	15,359,852	15,359,852	15,359,852	15,359,852	15,359,852	15,359,852	15,359,852	46,079,555
				79~83	14,244,133	117,645,988	11,764,599	143,654,720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43,096,416
				72~76												
				60~64												
				53~57												
			11~13층	30~48	15,558,774	128,503,947	12,850,395	156,913,116	15,691,312	15,691,312	15,691,312	15,691,312	15,691,312	15,691,312	15,691,312	47,073,935
				79~83	14,572,793	120,360,478	12,036,048	146,969,319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44,090,796
				72~76	14,572,793	120,360,478	12,036,048	146,969,319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44,090,796
				60~64	14,572,793	120,360,478	12,036,048	146,969,319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44,090,796
				53~57	14,572,793	120,360,478	12,036,048	146,969,319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44,090,796
			14~16층	30~48	15,887,434	131,218,437	13,121,844	160,227,715	16,022,771	16,022,771	16,022,771	16,022,771	16,022,771	16,022,771	16,022,771	48,068,314
				79~83	14,901,453	123,074,968	12,307,497	150,283,918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45,085,175
				72~76												
				60~64												
				53~57												

오피스텔	B1	24	9~10층	29	15,230,114	125,789,457	12,578,946	153,598,517	15,359,852	15,359,852	15,359,852	15,359,852	15,359,852	15,359,852	15,359,852	46,079,555
				78	14,244,133	117,645,988	11,764,599	143,654,720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43,096,416
				58												
			11~13층	29	15,558,774	128,503,947	12,850,395	156,913,116	15,691,312	15,691,312	15,691,312	15,691,312	15,691,312	15,691,312	15,691,312	47,073,935
				78	14,572,793	120,360,478	12,036,048	146,969,319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44,090,796
				58												
			14~16층	29	15,887,434	131,218,437	13,121,844	160,227,715	16,022,771	16,022,771	16,022,771	16,022,771	16,022,771	16,022,771	16,022,771	48,068,314
				78	14,901,453	123,074,968	12,307,497	150,283,918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45,085,175
				58												
	B2	16	9~10층	77	14,244,133	117,645,988	11,764,599	143,654,720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14,365,472	43,096,416
				59												
			11~13층	77	14,572,793	120,360,478	12,036,048	146,969,319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14,696,932	44,090,796
				59												
			14~16층	77	14,901,453	123,074,968	12,307,497	150,283,918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15,028,392	45,085,175
				59												
	C	104	9~10층	51	21,366,249	176,469,387	17,646,939	215,482,574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64,644,772
				3~14	20,914,913	172,741,685	17,274,169	210,930,766	21,093,077	21,093,077	21,093,077	21,093,077	21,093,077	21,093,077	21,093,077	63,279,230
			11~13층	51	21,817,585	180,197,088	18,019,709	220,034,382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66,010,314
				3~14	21,366,249	176,469,387	17,646,939	215,482,574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64,644,772
			14~16층	51	22,268,921	183,924,790	18,392,479	224,586,189	22,458,619	22,458,619	22,458,619	22,458,619	22,458,619	22,458,619	22,458,619	67,375,857
				3~14	21,817,585	180,197,088	18,019,709	220,034,382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66,010,314
	C1	8	9~10층	15	20,914,913	172,741,685	17,274,169	210,930,766	21,093,077	21,093,077	21,093,077	21,093,077	21,093,077	21,093,077	21,093,077	63,279,230
			11~13층	15	21,366,249	176,469,387	17,646,939	215,482,574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21,548,257	64,644,772
			14~16층	15	21,817,585	180,197,088	18,019,709	220,034,382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22,003,438	66,010,314
	D	16	9~10층	50	43,233,103	357,073,405	35,707,341	436,013,849	43,601,385	43,601,385	43,601,385	43,601,385	43,601,385	43,601,385	43,601,385	130,804,155
				1												
			11~13층	50	44,208,139	365,126,482	36,512,648	445,847,269	44,584,727	44,584,727	44,584,727	44,584,727	44,584,727	44,584,727	44,584,727	133,754,181
				1												
			14~16층	50	45,183,175	373,179,558	37,317,956	455,680,689	45,568,069	45,568,069	45,568,069	45,568,069	45,568,069	45,568,069	45,568,069	136,704,207
				1												
	D1	16	9~10층	49	45,183,175	373,179,558	37,317,956	455,680,689	45,568,069	45,568,069	45,568,069	45,568,069	45,568,069	45,568,069	45,568,069	136,704,207
				2												
			11~13층	49	46,158,211	381,232,634	38,123,263	465,514,109	46,551,411	46,551,411	46,551,411	46,551,411	46,551,411	46,551,411	46,551,411	139,654,233
				2												
			14~16층	49	47,133,247	389,285,711	38,928,571	475,347,529	47,534,753	47,534,753	47,534,753	47,534,753	47,534,753	47,534,753	47,534,753	142,604,259
				2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거주자 우선 분양(오피스텔)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양호실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8.24)**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안산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08.24)** 현재 안산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이 적용됩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 오피스텔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8월 30일(월) 08:00~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9월 2일(목) 16:00시 이후	9월 3일(금)(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중앙하이츠 MARE 오피스텔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2,2층)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신한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노약자, 장애우에 한하여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5,000,000원 (금오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신한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신한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통)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본인도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 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신한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명의)
• 법인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1부(용도:오피스텔)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td></tr>
</table>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 일체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오피스텔 청약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1항에 의거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1인당 1실만 청약접수 가능, 호실은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동일인이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08.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1년 09월 2일(목)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타입·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오피스텔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관련 문의 : 환불관련 문의는 아시아신탁(주)이 아닌, 중앙하이츠 MARE 대표번호 1800-6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1년 9월 3일(금)	10:00~16:00	중앙하이츠 MARE 오피스텔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2,2층)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신한은행	100-035-339028	아시아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A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A-1001홍길동)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위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위의 계좌로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은 견본주택에 제출합니다. (견본주택 수납불가)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관계자(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금주 아시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시행수탁사(분양사업자)로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1.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3.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통)
4.계약자 인감도장
5.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용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계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 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td><td>- 계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계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1.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5.법인 인감증명서 1부(용도:오피스텔 계약용)
6.법인 등기부등본 1부
7.법인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 일체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계약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

계약금(10%)	1차중도금(10%)	2차중도금(10%)	3차중도금(10%)	4차중도금(10%)	5차중도금(10%)	6차중도금(10%)	잔금(30%)
계약체결시	2021.11.25	2022.02.25	2022.05.25	2022.08.25	2022.11.25.	2023.03.25	입주지정일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또는 잔금은 별도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입금자 표기 예시 : 2001호 홍길동 : 2001홍길동
- 납부기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은행 영업일)로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납부일정은 오피스텔 기준입니다.
- 위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공급면적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2항 규정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의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신분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10% 및 기타 연체금 등을 납부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에 부합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총분양대금의 60%범위 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중도금 1회차~중도금 6회차) 오피스텔 기준임.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대출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분양대금계좌에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오피스텔 전체 분양대금의 60%이내)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시행 위탁사에서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중도금 대출제한 및 대출이자 상승, 대출불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실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시에는 별도의 이자지원 및 할인은 적용 불가합니다.

Ⅳ 기타 계약자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분양받은 자는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가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관계자(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 및 사용승인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건축물은 시행위탁자 ㈜나래홀딩스,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 시공사 동우개발(주), ㈜신화종합건설 간 체결한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공급계약자는 인지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나래홀딩스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나래홀딩스이고, 아시아신탁㈜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자(수분양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공급계약자(수분양자)는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나래홀딩스와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결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나래홀딩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신탁해지시에는 사업주체가 ㈜나래홀딩스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은 ㈜나래홀딩스에게 이전됩니다.

•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으로서의 일체 의무(공급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의무, 소유권이전관련 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에 의하여 부담합니다.

• 시행수탁자는 신탁계약 및 신탁사업약정에 의거, 현존하는 신탁계좌의 잔액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함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탁자의 분양대금반환 의무 등은 현존하는 신탁계좌의 잔액 범위 내로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수탁자의 고유 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위 의무

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시행수탁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시공사를 대신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입주지정일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자동연장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이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V 기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본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개공지 또는 기타 건물 배치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의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환경 및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호실에 대한 호실구획(호수 및 면적조정) 및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실당 전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즉 준공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정산 처리됩니다.

• 본 건물은 용도별로 별도 구분되어 분양되는 시설이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면적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계약면적에 미포함되며, 따라서 계약자는 주차장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편의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오피스텔의 법정 주차 대수인 세대 당 0.7대 이상으로, 주차장 소유자와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일반관리비 수준의 비용으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냄새)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본 오피스텔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건축법 제22조 3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부대시설,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사가 지정하는 관리회사가 입주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본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의결에 따라 관리회사를 유지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입주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등이 결성되지 못하여 관리회사의 교체 또는 유지에 대하여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사가 지정한 관리회사가 관리단 등이 결성되고 의결이 가능한 시점까지 본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본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사가 상기 관리회사와 준공 이전에 체결하는 관리제공 관련 계약(관리계약)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고 승계하여야 하고 위탁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은 추후 별도 통보하며, 관리계약에 따라 입주 후 상기 관리회사가 관리 및 시설관리를 수행하기로 하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상기 관리회사가 본 건축물을 관리 및 시설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관리계약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 모형 및 분양 유인물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명칭 및 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또는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표현된 것으로 실제 시공되는 사항(면적, 배치, 형태, 창호형태 및 설치위치, 가구/주방 배치, 옵션적용여부 등)은 계약체결 전 반드시 도면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분양 관련사항)

-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업종에 대한 독점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증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층의 공유시설 사용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항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공중에 샘플실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당사자(계약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각종 기구(조명/배선기구/전기통신함 등)의 설치위치 및 재질, 사양이 계약자에게 개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공고, 광고물 관련사항)

• 각종 광고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지하철역, 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홍보물에 표시된 인근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표시, 설치된 시설의 색상 및 크기, 형태, 작동방법은 실 착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사인물, 가구, 가전제품 중 일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디스플레이(전시용품)용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문프레임 규격 및 색상 및 형태, 외벽 마감재질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타입별 설계도서 및 카탈로그 등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계약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공동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고저차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등 각종 인쇄물 및 CG(조감도, 투시도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건축인허가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평면도 및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 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중앙하이츠 마레), BI, 색채 계획 등은 향후 관계기간과의 협의 또는 심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에 따라 단지 BI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편익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유의사항(단지 내·외부 관련사항)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주차전용시설로 지상1층~지상8층에 주차장을 계획되어 있으며, 별도의 소유권을 가진다.
-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통행에 불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수 처리를 위한 시설이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과 외부시설물의 위치, 비상차량동선 및 옥상 산책로 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도서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업무 또는 영업 등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과 대지와의 레벨 관계에 의하여 일부 출입구 부분에 계단 및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배치 및 설계계획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도로, 교통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법적 기준내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본 건축물의 외부/내부 마감, 재질 및 색채 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외부/내부 디자인 및 마감 재질, 구조적 문제 등에 따라 간판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또는 해당 호실의 특화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들에 대해 현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설치된 시설들의 고장 및 수리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 일부 특화를 하여 주변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계약자 임의로 옮길 수 없으며, 조명에 의해 일부 내부에 빛이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명의 위치나 빛의 세기 등이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일부 특화를 위하여 내·외부 및 주변에 설치된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세 및 관리비용은 입주민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물 내 부대시설은 현장여건 따라 입주시 카탈로그, 모형 및 투시도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타입에서도 평면의 방향, 설비기구 배치, 보, 내부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계 유의사항(공통사항)

-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따라 층고 및 천정고는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전 관련 도면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실)와 미건립 오피스텔 세대(실)는 견본주택에 건립된 타입과 면적, 배치, 형태, 창호 형태 및 설치위치, 가구/주방 배치, 옵션적용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단지모형 및 분양카탈로그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호실 및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세대(실) 내부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배치계획에 따라 일부호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견본주택이나 카탈로그에 안내된 것과 반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핸드레일, 유리 등은 본 공사시 제조사, 유리, 하드웨어, 프레임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내부에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부대시설은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 및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을 통한 바닥난방이며, 냉방은 냉방전용 에어컨으로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냉방전용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타입별, 호실별로 상이하게 설치됩니다.
- 내·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의 불리, 우천시 소음,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분양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갑”은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본 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허가 도면상 토지의 지형지물에 따라 경사도에 의한 각 호실 및 복도간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 등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펜스 설치 및 변경,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는 안산시 단원구청의 기준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를 확인하시고 관할관청의 승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전기,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지역난방설비, 배기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의 마감사양, 시설 및 조경등과 본 건축물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시설, 조경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 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분양사업자/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10111-3543801
시 공 사	동우개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해안북로 157-3, 101호	124511-0002567
	주식회사 신화종합건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80 신화빌딩 10층	180111-0110485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나래홀딩스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59-47, 937호	131411-0467029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밸류플러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파밀리에펄시티 22층 2230호	180111-1343449
감 리 사	주식회사 대원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60, 402호	131411-0281734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아시아신탁㈜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061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공동사업표준협약(분담수행방식)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안산시청 (2021-건축디자인과-신축허가-15) 2021. 06. 01. 허가완료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2, 2층 / 중앙하이츠 MARE 대표번호 1800-6323 / 홈페이지 : 중앙하이츠마레.com

※ 청약금 입금 확인 및 환불관련 문의는 아시아신탁㈜이 아닌, 중앙하이츠 MARE 대표번호 1800-632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